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79호

문서번호	토목기술부-423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6.02.25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부원	토목기술부장	택지계획처장	택지사업본부장
				02/25
설재훈	김병련	김익성	김소겸	정현규
협 조	마곡사업부장	황의필	위례사업부장	김영배

**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분장
조정에 따른 세부 검토보고**

서울특별시 SH공사

(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처 토목기술부)

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세부 검토보고

2015.12.28. 조직개편으로 개정된 업무분장에 따라 용지보상부에만 있던 『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』가 택지사업본부 관련 부서로 추가 분장되었으나, 사업지구 및 측량 후속 행정업무 등에 대한 세부 업무분장의 부재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하고자 함.

I **관련근거**

☐ 2015.12.28. :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(사장방침제1163호)

공공개발사업본부 (용지보상부)	택지사업본부 (토목기술부, 마곡사업부, 위례사업부)
-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-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	-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업무

☐ 2016.01~02. : 용지보상부와 토목기술부 간에 업무분장 이견에 따른 경영관리부(김찬수파트장)의 조정에 따른 세부 업무분장 조정

- 아래의 업무분장 조정(안) 중 제1안으로 결정

☐ 2016.02.28. : 사업지구 업무분장 통보(경영관리부-314호)

- 용지보상부 : 지적확정측량 업무(11개지구)
- 토목기술부 : 지적확정측량 업무(없음)

II **업무분장 현황 및 문제점**

☐ 업무분장 현황

- 제307회(2015.12.10) 이사회에서 택지사업본부장의 ‘업무의 효율성’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을 택지사업본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
- 2015.12.28.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 분장

관련부서	공공개발사업본부 (용지보상부)	택지사업본부 (토목기술부, 마곡사업부, 위례사업부)
당초	-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-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	-
변경	-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-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	- 사업지구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업무

□ 문제점

-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만 되어 있고, 사업지구 업무분장 및 측량업무의 후속 행정업무[토지분할신청, 관련기관(서울시, 관할 구청) 협의, 지적공부 정리(종전토지 폐쇄, 확정토지 생성)]의 세부 업무 분장이 없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.

Ⅲ 업무분장 조정(안)

- 제1안 : 택지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 중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과 파생되는 부가업무까지 택지사업본부에서 수행(타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지적업무는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수행)
- 제2안 : 현행 업무분장과 같이 택지사업본부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업무를 수행하되 부가업무는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수행
- 제3안 : 직제개편(2015.12.28) 이전과 같이 모든 사업지구의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업무를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수행

Ⅳ 업무분장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

□ 공공개발사업본부의 의견(제1안)

-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
 -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업무에 수반되는 토지분할신청, 관련기관(서울시, 관할

구청) 협의, 지적공부 정리(종전토지 폐쇄, 확정토지 생성), 등의 부가업무를 용지보상 부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비효율성 초래 우려

- 택지사업본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지구의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거나 공공개발사업본부에 해당 업무 전부를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.

□ 택지사업본부의 의견(제1안)

-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을 개발계획의 담당본부(택지사업본부)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추가 인력 지원 없이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만 수행코자 하였으나, 공공개발사업본부의 의견대로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의 업무로 파생되는 부가(행정)업무까지 택지사업본부에서 수행할 경우 토목 기술부 인력 부족 예상 (행정직 1명 필요)
- 택지사업본부(토목기술부, 마곡사업부, 위례사업부) 내 3개 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 토목기술부에서 마곡, 위례지구 포함 본부사업지구 전체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측량업무 수행

V

조치계획

- 위 업무분장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업무분장 조정 제1안으로 업무수행
 - 토지분할신청, 관련기관 협의, 지적공부 정리등 파생되는 부가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관리부 및 인사부에 행정직 1명의 인력 배치 요청.
- 토목기술부에서 택지사업본부의 예정도 작성 및 지적확정 관련 업수 수행
 - 마곡사업부, 위례사업부 업무분장에서 지적관련 업무 제외
 - 경영관리부에 사업지구 업무분장 변경 요청 (붙임 택지사업본부 시행 사업지구 참조)
- 예산자금부에 예정도 및 지적확정측량 예산 토목기술부로 조정 요청

붙임 지적확정측량 업무 흐름도 및 택지사업본부 사업지구 현황. 끝.